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에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민간면접관으로 하여금 귀화면접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 마련하여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위임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면접심사의 공정성 및 민간면접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귀화심사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귀화신청인에게 의견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귀화 신청·심사 절차에 관한 시행령 제3조부터 제4조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하는 한편,

온라인으로도 국적 신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개설·운영의 근거 마련,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국적업무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국적절차에서의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

- 1)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민간 면접관으로 하여금 면접심사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면접심사는 귀화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로 위임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귀화 면접심사의 위임을 위한 민간면접관 위촉에 관해 규정하고,
- 2) 민간면접관의 자격요건, 위촉 및 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귀화심사에 필요한 경우 귀화신청인에게 의견 진술, 자료 제출 및 거주지 등을 현지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의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귀화허가 여부를 결정하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귀화심사에 필요한 조회·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법무부장관이 직접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귀화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귀화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주지를 현지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다. 복잡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 (안 제3조부터 제4조의3)

귀화허가 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및 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조문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귀화신청인(안 제3조제1항), 신청 접수기관의 장(안제3조제2항), 법무부장관의 업무별 절차에 따라 조문을 구분·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4조 개정,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3 신설)

라.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방법을 서식으로 일원화 (안 제18조의4)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의무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직무 상 발견한 복수국적자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때는 인적사항 등을 적은 서류로써 하고 있는 것을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 서식으로써 하도록 함

현 행	개 선
제18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절차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하여야 하며, -----.	제18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u> -----.

마.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국적업무의 종류 확대(안 제25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 재외공관 신청을 통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회복허가에 의해 국적 취득’한 사람이 1년 내에 외국국적포기의무를 이행(외국국적 포기증명서나 불행사서약서 제출)하려면 국내 입국해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국국적이 상실되고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있음. 이에 따라 재외공관 신청을 통해 국적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나 불행사서약서 제출 절차도 재외공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 19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어 국내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적취득 절차의 개선 필요

바. 국적 온라인신청 방식 도입을 위한 전자민원창구 개설·운영 근거 마련(안 제25조의3)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받으려면”을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를 “신청서와 법 제5조부터 제7조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무부장관에게”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가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주지를 현지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귀화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로 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본소양 요건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응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부터 제4조에 따른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면접심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접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화 민간면접심사관(이하 ‘귀화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귀화 민간면접관의 자격요건, 위촉 및 해촉,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귀화허가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나 면접심사의 실시·면제 여부를 불문하고, 제3조부터 제4조에 따른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거나 동 조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3.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제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 또는 신청)”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서를”을 “신청서 등을”로 한다.

① 이 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나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나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조 제1항의 국적취득신고

2. 법 제9조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신청

3. 법 제11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제2항, 법 제15조 제2항, 법 제1

6조 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고·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11조 제1항에 따른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제출 또는 법 제10조 제2항 및 영 제11조 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전자민원창구)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개설·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①----- ----- 받 으려는 사람은 ----- ---- 신청서와 법 제5조부터 제7조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음 을 입증하는 서류를 ----- ----- ----- ----- --.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 절 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법무 부장관에게 ---. <단서 삭제>
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	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가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자

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귀화 요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현지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유

3.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주지를 현지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귀화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삭 제>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삭 제>

<삭 제>

1. 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나 면접심사의 실시·면제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하거나,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종합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⑦ 제3항에 따른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면접심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삭 제>

제4조의2(기본소양 요건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법무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응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부터 제4조에 따른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면접심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접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화 민간면접심사관(이하 ‘귀화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을 둘

<신 설>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귀화 민간면접관의 자격요건, 위촉 및 해촉,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귀화허가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나 면접심사의 실시·면제 여부를 불문하고, 제3조부터 제4조에 따른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거나 동조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3.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제4조의2 ~ 제4조의4 (생 략)

제18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하여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한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

2. 외국 국적의 영문 성명 및 생년월일

③ (생 략)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 또는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13조제1항·제2항, 법 제15조제2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신청은 그 신고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경우

제4조의4 ~ 제4조의6 (현행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와 같음)

제18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 -----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신청 등) ① 이 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나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나 신청서 등을 제출할

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나 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수 있다. 1. 법 제3조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 2. 법 제9조 제1항의 국적회복 허가신청 3. 법 제11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제2항, 법 제15조 제2항,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고·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11조 제1항에 따른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제출 또는 법 제10조 제2항 및 영 제11조 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② ----- 신청서 등을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전자민원창구)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개설·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국적과	
연 락 처	(02) 2110 - 4122